

| | |
|--------------|----------------|
| 의안번호 | 제 737 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발 의 자 | 박성원 의원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원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737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발 의 자 : 박성원 의원

찬 성 자 :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1. 제안 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학교를 추가하여 교복지원 대상 학교를 명확히 하고, 교복지원 대상에 각종학교를 포함시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에 “학교” 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교복 지원 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생활교육팀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41호

(2021. 4. 13. ~ 2021. 4. 19.)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청북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를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22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 style="margin-left: 20px;">1. · 2. (생략)</p> <p>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자는 <u>충청북도 내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의 학생</u>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 3.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② · ③ (생략)</p> | <p>제2조(정의) ----- -----.</p> <p style="margin-left: 20px;">1. “학교”란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u>충청북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u>를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제5조(지원대상) ① ----- ----- <u>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u>의 ----- -----.</p> <p style="margin-left: 20px;">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② · ③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
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
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산출근거

(단위:원,명)

| 구분 | 단가 | 학생수 | 금액 | 비고 |
|-----------|---------|------------|----------------------|----|
| 2022년 | | | | |
| 각종학교 신입생 | 300,000 | 167 | 50,100,000 | |
| 2023년 | | | | |
| 각종학교 신입생 | 300,000 | 167 | 50,100,000 | |
| 2024년 | | | | |
| 각종학교 신입생 | 300,000 | 167 | 50,100,000 | |
| 2025년 | | | | |
| 각종학교 신입생 | 300,000 | 167 | 50,100,000 | |
| 2026년 | | | | |
| 각종학교 신입생 | 300,000 | 167 | 50,100,000 | |
| 합계 | | 835 | 2,505,000,000 | |

- 각종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현황 조사(학교에서 직접 신입생 모집)
 - 다다예술학교 중학교 신입생 **7명**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45명**
 - 글로벌선진학교 중·고등학교 신입생 **115명**
- 2021학년도 교복 지원금 3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년도 (2024년) | 4차년도 (2025년) | 5차년도 (2026년) | 계 | |
|----------------------|-----------------|-----------------|-----------------|-----------------|-----------------|---------|---------|
| 세 입 | 50,100 | 50,100 | 50,100 | 50,100 | 50,100 | 250,500 | |
| | | | | | | | |
| 세 출 | | | | | | | |
| 교복비지원 | 50,100 | 50,100 | 50,100 | 50,100 | 50,100 | 250,500 | |
| 재원 조달 | |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50,100 | 50,100 | 50,100 | 50,100 | 50,100 | 250,500 |
| | 국고보조금 | | | | | | |
| | 보통교부금 | 50,100 | 50,100 | 50,100 | 50,100 | 50,100 | 250,500 |
| | 특별교부금 | | |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 | 자체수입 | | |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등) | | | | | | | |